

전북과학기술원법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00
----------	-------

발의연월일 : 2026. 9. 16.

발 의 자 : 이성윤 · 윤준병 · 안호영
朴芝源 · 정동영 · 황운하
김재원 · 이춘석 · 임오경
박희승 · 강경숙 · 안태준
김형연 · 한민수 의원
(14인)

제안이유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새만금에 집적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를 국가 성장으로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첨단기업의 투자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산업시설과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기술을 연구하고 산업에 적용할 연구개발 역량과 이를 담당할 청년 과학기술 인재가 함께 갖추어져야 함. 특히, 퍼지컬 인공지능, 로봇파운드리, 양자컴퓨팅, 제조 인공지능 및 다크 팩토리 등 전북특별자치도에 산업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거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연구·개발

및 실증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기초·응용·융합 및 실증 연구와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전담할 과학기술원이 없음. 이에 따라 새만금에 유치되는 첨단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과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배우고 연구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 첨단과학기술 연구와 고급인재 양성,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국내외 교육·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과학기술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전북과학기술원을 법인으로 하고, 정관·임원·이사회·총장 및 평의원회 등 전북과학기술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3조의2).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이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채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전북과학기술원이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의 이전·사업화 및 교원·직원·학생의 창업을 지원하며, 연구성과의 실증 및 산업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마. 전북과학기술원이 피지컬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양자과학기술 및 제조 인공지능 등 지역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특성화하여 교육·연구 및 실증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총장이 5년마다 특성화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바. 전북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두고, 학위수여와 교원·연구원 및 학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사. 전북과학기술원이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특정과제의 공동연구에 필요한 조치와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의 연구시설·기기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전북과학기술원이 교육·연구 및 산학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 공동교육과정·공동연구과제를 운영하고, 공동연구센터 설치와 교원·연구원·학생의 상호 교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전북과학기술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융합과 산업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기초·응용·실증연구,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의 혁신과 국가과학기술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전북과학기술원(이하 “전북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전북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전북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부설기관) 전북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전북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전북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① 전북과기원에는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전북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전북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6조(이사회) ① 전북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 및 2명 이상의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서는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내용·방식, 배부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 기간·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총장) ① 전북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전북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제8조(출연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전북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북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유·공유 재산 등의 사용허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전북과기원에 사용허가하거나 대

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전북과기원에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의2(수익사업) ① 전북과기원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전북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전북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전북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전북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4(창업지원) ① 전북과기원은 교원·직원·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

다.

제9조의5(연구성과의 실증 및 산업혁신 지원) ① 전북과기원은 연구성과의 산업현장 적용과 확산을 위하여 기술의 시험·평가·검증 및 실증, 시제품의 설계·제작, 제조공정의 지능화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전북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산업계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기업 등이 전북과기원의 시설·장비를 이용하고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연도) 전북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전북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북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때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제12조(지원·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북과기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12조의2(특성화 분야의 육성) ① 전북과기원은 퍼지컬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과 그 설계·제조 및 실증을 위한 공용 기반, 양자컴퓨팅을 포함한 양자과학기술 등 첨단과학기술과 제조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기술 및 무인·자율화 제조시스템 등 지역산업의 융합 분야를 특성화하여 교육·연구 및 실증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과학기술 및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특성화 분야의 선정·조정, 교육·연구, 인재양성, 산업현장 실증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특성화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성화발전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④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특성화발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학위과정 등) ① 전북과기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學科)·전공 및 교과(敎科)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3조의2(평의원회) ① 전북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직원·연구원·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전북과기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전북과기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

원, 연구원,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전북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
6항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에 의
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교원 및 연구원) ① 전북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전북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원(研究員)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전북과기원은 교
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

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원의 임면) ① 전북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② 전북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의2(교원인사위원회) ① 전북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산학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

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 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횟수, 평가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17조(학생) 전북과기원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제교류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북과기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의 수학(修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전북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연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금의 지출

3. 그 밖에 기금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부 등) ① 전북과기원에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전북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 전북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 을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연구시설 등의 공동구축 및 이용) ① 전북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 연구·실증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지역혁신역량의 결집을 위하여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기업 및 전문단체 등과 연구시설·실증시설·기기 등을 공동으로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여기관 또는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2(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① 전북과기원은 교육·연구 및 산학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교육·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전북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공동교육과정 및 공동연구과제를 운영하거나 공동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교원·연구원 및 학생을 상호 교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점의 상호 인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③ 전북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이 전북과기원의 보직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기관 간 협약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동일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북과기원이 아닌 자는 전북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비밀엄수의 의무) 전북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민법」의 준용) 전북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전북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북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북과학기술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설립준비) ① 설립위원회는 전북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전북과기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 제12조의2에 따른 최초의 특성화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설립등기 후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비용) 전북과기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전북특별

자치도가 협의하여 부담한다.